

위임장					
신고사항	자동차	☐ 신규등록	☐ 말소등록	☐ 등록증재발급	☐ 번호판재교부
		☐ 이전등록	☐ 저당등록	☐ 임시운행반납	☐ 기타(하단기재)
		☐ 변경등록	☐ 저당말소	☐ 임시운행허가	
	이륜차	☐ 사용신고	☐ 폐지신고	☐ 사용신고필증 재교부	☐ 기타(하단기재)
		☐ 변경신고	☐ 경정신청	☐ 사용폐지증명서 재교부	
차량등록번호 (차량 번호)			차종 및 차명		
소유자 (위임자)	성 명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주 소				
위임받은 사람 (수임자)	성 명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주 소				
위 사람에게 상기 신청내용에 관한 등록 및 취득세 고지에 있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위임자(소유자)가 부담하겠습니다.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(소유자) (인)					
※ 이 위임장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 유 의 사 항 >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					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